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5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 : 남인순·장종태·김남희

염태영 · 김재원 · 김 윤

문진석 • 전진숙 • 이병진
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,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 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.

또한,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 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 도록 하며,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 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8 조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"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"을 "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경고문구의"를 "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"로 한다.

- 1.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
- 2.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
- 3.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중 "경고문구를"을 "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경고문구가"를 "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이"로, "경고문구를"을 "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"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"경고문구를"을 각각 "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고문구·경고그림 표기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 ~	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	4
률」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	
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	
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	
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	
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	<u>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 및</u>
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	<u> 경고그림을</u>
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	.
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	
한다.	
<u><신 설></u>	1.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
	다는 내용
<u><신 설></u>	2.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
	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
<u><신 설></u>	3.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
	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
	<u>는 내용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항에 따른 <u>경고문구의</u>	⑥ <u>경고문구</u>
표시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	<u>및 경고그림의</u>
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	

정한다.

- 제8조의2(주류광고의 제한·금지 특례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제8조제4항에 따른 <u>경고문구</u> 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 기하여 광고할 것. 다만, <u>경고</u>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자 할 때에는 <u>경고문구를</u> 주 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 하여야 한다.
 - 5. · 6. (생략)
 - ③ (생 략)
- 제31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<u>경고</u> <u>문구를</u>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<u>경고문구를</u> 표기한 자

제8조의2(주류광고의 제한·금지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	
2	
1. ~ 3. (현행과 같음)	
4 <u>경고</u>	
문구 및 경고그림을	
<u>경</u>	
고문구 및 경고그림이	
<u>경고</u>	
문구 및 경고그림을	
5. · 6. (생 략)	
③ (현행과 같음)	
제31조의2(벌칙)	
1. (현행과 같음)	
2 <u>경고문구 및</u>	
<u> 경고그림을</u>	
<u>경고문구 및</u>	
<u> 경고그림을</u>	
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